

|                                                                                   |               |                                                                                                                 |
|-----------------------------------------------------------------------------------|---------------|-----------------------------------------------------------------------------------------------------------------|
|  | <h1>법률동향</h1> | <div>2026. 6. 30.(화)</div> <div>법무과장 윤재순(☎32030)</div> <div>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div> <div>주무관 김덕영(☎33235)</div> |
|-----------------------------------------------------------------------------------|---------------|-----------------------------------------------------------------------------------------------------------------|

## 7월 주요 시행 법령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3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 도로교통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는바,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 공직선거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중대선거구제 실시 대상 선거구를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3헌바78)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을 조정하며,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함(현행 제18조제1항제1호 삭제, 제110조제2항 등).
- 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현행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함(제22조제4항).
-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시 서면신고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현행 제108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제108조의2제3항).
- 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되, 예비 후보자는 포함함(제251조 본문).
- 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중 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함(별표 2 및 부칙 제5조).
- 사.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도록 함(별표 3 및 부칙 제3조 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8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벤처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중 1주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운영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인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인권침해 실태 및 조치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함(제3조제3항 및 제4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함(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3조의4 및 제3조의5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3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사무총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는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소득세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 및 제5호)

-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제57조의2제1항·제2항,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4제3항)

-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8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양성평등기본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5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정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제49조의20 신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1 신설).
- 바. 국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자원안보위기 정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제3호).

## - 은행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교육세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 지방세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 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 의제(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납부(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부칙 제6조)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제103조의2제1항)

-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4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청소년 보호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바,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유형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11호, 2026. 3. 31.,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과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종전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별표 3 제306호 신설)

- 1)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세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수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추가(별표 3 제307호 및 제308호 신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분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 2026. 5. 12.,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 요청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86호, 2026. 3. 17.,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은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 부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 공무원임용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별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 조성을 위하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등이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 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5912호, 2025. 12. 16.,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외에 모바일 등록증을 제시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받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체장장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 6. 8.,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제출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신설하는 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에 가족관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2026. 2. 5.,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 6. 19.,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의 지역제한입찰 참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지역제한입찰 시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입찰자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체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체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2)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1천원으로 정함.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책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

- 1) 책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책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 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책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تان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성평등가족부령 제10호, 2026. 6. 11.,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성폭력피해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입소기간 연장 의사 등을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 7. 2.]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2026. 4. 1.,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용 경사로를 의무용품으로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며, 그 이득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수정함(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같은 항 제4호).
-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을 추가함(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 다.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제44조의7제2항 신설).
- 라.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의 경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과 부당한 목적 등이 인정되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44조의10 신설).
- 마.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의11 신설).
- 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까지 신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4 신설).
- 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 2026. 4. 23.,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방역기준 및 허가·등록 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의 통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안 제9조의2 신설)

-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및 재해, 질병 또는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2) 방역관리계획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의 단계별로 수립되도록 함.
- 3) 방역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단계별 공통 사항으로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의 사육 단계에서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가축의 운송 단계에서는 가축운반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조치 및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

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의 통지 방법(안 제9조의3)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제출 대행(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사육농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완화(안 별표 1의7)

-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별도 구분·구획된 전처리실을 갖춘 경우에는 부검실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나 필수 실험실 물품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 초·중등교육법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 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라. 학교민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7조 신설).

## － 기초연금법 시행령 －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면 종전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을 안내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30.]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 6. 18., 일부개정]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받으면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간주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정보 제공 동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신청인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절차도를 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개정하려는 것임.

###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